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급여법안 검 토 보 고

〈 에너지바우처의 에너지급여로의 전환 〉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07호)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제정안의 개관	4
나. 입법취지와 제정 필요성	8
다. 주요 쟁점 및 종합적 검토	11
2. 조문별 검토	15
가. 정의	17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8
다. 수급권자의 범위	20
라. 지방자치단체의 급여 실시 및 행정 부담	23
마. 수급품의 지급	26
바. 에너지급여 부담	28
사. 그 밖의 주요 내용	32

※ 참고자료 35

1. 현행·유사제도 및 신설제도(추정) 비교 35
2. 에너지급여 추정 예산(2025년 기준) 36
3.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2025년 기준) 37
4. 타부처·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 의견 38

I. 제안경위

2025년 2월 28일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급여법안은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에너지법」에 따라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저소득층가구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고 충분한 에너지 비용 지원에 한계가 있어 저소득 노동자와 주민 등의 적정한 에너지생활 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의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에너지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소득 등의 조사·확인조사, 에너지급여의 지급 중지, 보조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금융정보 등의 제공, 에너지급여의 부담,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금융정보등의 누설 등에 대한 벌칙 등 에너지급여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에너지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적정한 에너지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에너지급여, 수급권자, 수급자, 수급품, 보장기관, 소득인정액을 정
의함(안 제2조).
- 다. 에너지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라. 에너지급여의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에너지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
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함(안 제5조).
- 마. 수급권의 지급기준은 지급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및 지역별 기준에너지가격 등을 고
려하여 정함(안 제7조).
-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소득·재산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사
항을 추가로 조사하도록 하되, 이를 에너지복지 업무에 전문성과
경험이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
지).
- 사.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를 중지

하고, 수급자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연체한 경우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권한을 범정부복지통합망을 운영·관리하는 복지부장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현행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수행 방식,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적정한 에너지 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제정안은 총 25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에너지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적정한 에너지 생활 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제정안의 목적을 명시하고,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는 한편, 에너지급여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에너지급여 사업의 지원대상인 수급권자의 선정 범위부터 보장기관, 사업의 구체적인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에너지급여 지급에 필요한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실시 및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급여 신청의 각하 및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필요시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의 시행, 에너지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 에너지급여 사업 시행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제정안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과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범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16조)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에너지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정안의 개관]

장	조 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제6조(보장기관)
	제7조(수급품의 지급)
	제8조(에너지급여의 분리 지급)
	제9조(에너지급여의 실시)
	제10조(신청조사)
	제11조(확인조사)
	제12조(조사의 의뢰)
	제13조(조사의 방법·절차 등)
	제14조(에너지급여신청의 각하 및 에너지급여의 중지)
	제15조(금융정보의 제공)
	제16조(시범사업)

장	조 문
	제17조(에너지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제18조(지도·감독 등)
	제19조(에너지급여의 부담)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제21조(벌칙)
	제22조(벌칙)
	제23조(벌칙)
	제24조(벌칙)
	제25조(양벌규정)
부칙	(시행일) 공포 후 1년 경과 ※시범사업의 경우 공포 후 3개월 경과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에너지 급여의 실시 필요한 준비행위

이와 같은 제정안은 급여의 정의, 수급자 선정, 보장기관 역할, 집행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서 「주거급여법」과 유사한 틀을 따르고 있으나, 급여의 방식과 지급 수단, 수급권자 범위 등에서 차이점이 존재함.

[「주거급여법」 과의 주요 차이점]

구분	주거급여법	에너지급여법안
급여 목적	주거 안정	에너지 사용권 보장
급여 종류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등 복수 항목	단일 항목으로 지급
급여 방식	임대인 계좌 지급 등 목적지정 (용도 통제 가능)	수급자 계좌로 현금 지급 (용도 통제 부재)
소득인정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단, 최소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일 것)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단, 최소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일 것)

「주거급여법」은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현금 지급의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에너지급여는 단일 항목의 현금지급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목적 외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또한,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소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미수급자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일부 차상위 계층이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함.

반면, 에너지급여는 제정안에 명시된 수급자 선정기준의 최소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생계급여 수준(기준 중위소득 32%)과 유사하여 기존 바우처 제도의 수혜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¹⁾였던 기후민감계층이 제정안에 따를 경우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4가지 급여 중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가장 광범위함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적용됨.

나. 입법취지와 제정 필요성

현행 「에너지법」에 근거한 에너지바우처 제도²⁾는 기후민감계층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권리로 보장된 급여가 아닌 재량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음.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시행 중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기관으로 운영하는 구조임. 기초생활수급자³⁾(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 노인·장애인 등 특정 세대 특성을 갖춘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70만원 가량⁴⁾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며, 하절기·동절기 구분에 따라 전기요금 차감

2) 「에너지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에너지 이용 현황

3.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뜻함. 4가지 급여 중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가장 광범위함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적용됨.

4)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또는 실물카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 기후민감계층* 약 130.7만 가구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단가	-가구 당 연평균 36.7만원(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원)
지원방식	-실물카드·가상카드를 통해 에너지비용의 일부를 지원 * (실물카드) 연탄, 등유, LPG 등 수급자가 선택, (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기간	-2025년부터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5.7.1.~2026.5.25.)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지원체계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발급·배송(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에공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만, 현행 바우처 제도는 단독 저소득 청년 가구,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수급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지급기준이 예산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므로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아울러, 에너지 수요 증가 및 가격 변동성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지원 수준으로는 최소한의 에너지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⁵⁾한 측면이 있음.

5) 서울신문, “패딩 입고 버텼는데... 28만원 나와” 1월분 ‘난방비 폭탄’에 곳곳서 신음”, 2025.2.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2/25/20250225012004>)
머니투데이, “보일러는 켜둘 때만, 취준생 결단...난방비 폭탄에 떠는 시민들”, 2025.12. (<https://www.mt.co.kr/policy/2025/12/04/2025120320070290982>)

이에 따라 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체계와 유사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지출로서 에너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에너지급여 재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용 부담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에너지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에너지복지 정책의 법률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 주요 쟁점 및 종합적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급여 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따르고 있으나, 급여 방식, 수급 대상, 재정 구조 등의 측면에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에너지급여의 도입은 급여 수준과 지원 대상을 법정 급여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 대비 재정소요 증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법안 비용추계 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를 경우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5,071억원(이 중 에너지 급여 실시를 위한 비용은 연평균 4,826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와 다른 가정을 도입⁶⁾하여 제정안 시행 시 연간 총 재정소요가 약 1조 3,436억원에서 최대 1조 9,5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바우처 예산(2026년 기준 5,171.7억원)의 3배를 초과하는 규모임.

특히, 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에너지급여를 부담하도록 규정⁷⁾하고 있는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추계에 따를 경우 지방정부는 상

6)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세대당 지원 단가를 36.7만원으로, 생계급여 수급권자 지급 대상 가구 수를 대상 가구 수(2024년 기준, 124만 가구)로 보았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세대당 지원 단가를 광열비까지 고려한 97.1만원(단가 36.7만원 + 광열비 60.4만원)으로 가정하고, 에너지급여 대상을 최소 생계급여 수급권자(2025년 기준, 138만 가구)에서 최대 교육급여 수급권자(2025년 기준, 201만 가구)로 산정함.

7) 제정안 제19조(에너지급여의 부담) 에너지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부담한다.

당한 재정상 추가 부담⁸⁾을 지게 되며, 이는 제도 시행의 현실적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음.

둘째,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재정사업으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법정 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예산 편성과 제도운영의 탄력성이 제도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예컨대, 유가 급등, 기후위기 장기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급여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도, 정부는 재정 여건에 따라 급여 단가나 지원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장기적 측면에서 제도 지속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음.

셋째, 제정안은 에너지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최소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명시하고 있는데,

중위소득의 30% 수준에서 선정기준이 결정될 경우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이던 기후민감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일부(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까지 분포)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적정 지원 대상의 축소는 법정 급여 신설의 명분과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넷째, 개정안은 급여를 수급자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8)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만 추계한 것으로, 여기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비용,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전문기관 운영비 등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채택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 외 다른 목적으로 자금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행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연료비에만 사용 가능한 지정용도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정책 목적에 따른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 반면, 에너지급여는 이러한 용도 제한 장치가 미비하여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섯째, 제정안은 에너지급여법을 제정하면서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등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양 법률에서 유사한 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제도와 에너지급여 제도를 각각 규정하는 경우 제도 운영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과 「에너지법」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조문]

조문	주요내용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 정부는 에너지이용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 실시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 기후부 장관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에너지이용권 발급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 이용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 공급 수령 -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 기후부 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 또는 업무정지 가능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16조의7(과징금처분)	-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하나의 장(총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장만 있는 것은 어색하므로 장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부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소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실시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2. 조문별 검토

제정안은 총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개별 급여의 틀을 준용하여 급여의 정의(제2조), 수급권자의 범위(제5조), 보장기관(제6조), 급여의 종류 및 지급방식(제7조), 급여 실시 절차(제10~13조), 급여중지·반환(제14조·제20조), 벌칙(제21조~제24조) 등 전체적으로 「주거급여법」과 유사한 체계로 설계되어 있음.

다만, 에너지급여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범위(즉, 에너지급여 선정기준)를 규정한 안 제5조, 급여 방식과 집행 수단을 정한 안 제7조 등 주요 조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기존의 에너지바우처 제도와의 연계성, 수급대상에서의 형평성 확보, 목적 외 사용 방지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하에서는 주요 쟁점과 관련된 조문을 중심으로 제정안의 취지와 보완 필요성을 조문별로 검토함.

[「주거급여법」 과의 조문별 비교]

주거급여법	내용	에너지급여법안	내용
제1조(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제1조 (목적)	저소득층의 에너 지생활 보장
제2조(정의)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 정의	제2조 (정의)	유사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주거급여 실시에 필 요한 책무	제3조 (국가 등의 책 무)	에너지급여 실시 에 필요한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생활 보장법」과 의 충돌방지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일
제5조(수급권자)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3%이상)	제5조 (수급권자)	에너지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제6조(보장기관)	지자체 등 보장기관 역할 명시	제6조 (보장기관)	동일
제7조(임차료의 지 급) /제8조(수선유지 비의 지급)	임차료, 수선유지비 복수 항목	제7조 (급여의 지급)	단일항목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청년가구원에게 급여 분리지급	제8조 (에너지급여의 분리지급)	동일
제9조(주거급여의 실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준용	제9조(에너지급여의 실시)	동일
제10~13조(신청, 조 사, 결정)	수급자 신청 및 지자 체 조사 절차	제10~13조(신청, 조 사, 결정)	동일
제14조(급여의 중지 등)	조사 불응, 부정 수급 시 조치	제14조 (급여의 중지 등)	동일
제1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금융정보 조회 및 이 의신청	제1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일
제16조(시범사업)	임차료 지급 시범사 업 가능	제16조(시범사업)	동일
제17조(주거급여 지 급업무의 전산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 17 조 (에 너 지 급 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동일
제18조(지도·감독 등)	보장기관 관리·감독	제18조(지도·감독 등)	동일
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	제19조(에너지급여의 부담)	동일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부정수급 징수, 과잉 지급 반환 등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동일
제21~24조(벌칙)	금융정보 누설, 정보 시스템의 정보 훼손, 부정수급 등의 위반 시 처벌	제21~24조(벌칙)	동일
제25조(양벌규정)	사용자 양벌	제25조 (양벌규정)	동일

가. 정의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8호의 에너지급여로서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에너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에너지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에너지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안 제2조는 “에너지급여”, “수급자”, “수급품” 등 이 법에서 사용되는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에너지바우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체계 내 법정 급여로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법정 급여 형태의 에너지급여는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과 내용을 정하는 구조이므로,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에너지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현행 에너지바우처 대비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급여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행정적으로 제도의 유

연성과 신속성, 정책 대응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 정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너지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다.
제9조(에너지급여의 실시) 에너지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등 에너지급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

안 제4조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에너지급여의 신청·결정·변경 등 제도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급여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체계 내 법정 급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 입법 구조로 해석됨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계급여 등 제반 급여¹⁰⁾의 신청, 조사 결정, 실시 등의 일반적인 절차와 이의신청, 비용의 징수, 반환 명령,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9)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제 2208608호,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은 에너지급여를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

10)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解産給與), 장제급여(葬祭給與) 및 자활급여

에너지급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급여별 절차와 집행기준 등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수급자의 불편 및 일선기관의 행정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다만, 제정안이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에너지급여는 사실상 기존 에너지바우처를 대체하게 되는바, 향후 유사 제도 간 역할 중복, 수급 범위의 경합, 항목 간 충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일례로, 에너지바우처가 에너지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그 지급수준은 현행 에너지바우처 단가와 생계급여 내 광열비¹¹⁾ 항목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2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97.1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음¹²⁾.

이러한 급여 구조는 생계급여 항목 중 광열비가 에너지급여로 이관되는 방식을 전제로 하는데, 이 경우 향후 제도 논의 방향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액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제정안 시행에 앞서 급여 전환으로 인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도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입법적 검토가 병행되어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12)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중 광열비는 연 604,056원,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367,000원임.

야 할 것임.

다. 수급권자의 범위

제 정 안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에너지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안 제5조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에너지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5조 후단의 “에너지급여 선정기준”은 같은 조 전단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문언상으로는 이와 같은 대응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주거급여법」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기준에 대한 규정¹³⁾을 고려하여 에너지급여 선정기준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

13)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

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5조는 에너지급여 선정기준은 최소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소득기준 범위와 유사하여 4대 급여 중 수급권자의 범위를 가장 제한적으로 설정하게 되는 것임.

[급여별 소득기준 범위]

종류	수급권자의 소득기준 범위	현행
생계급여	중생보위 심의·의결 금액 이하 ~ 중위소득 30% 이상	중위 32%이하
의료급여	중생보위 심의·의결 금액 이하 ~ 중위소득 40% 이상	중위 40%이하
주거급여	중생보위 심의·의결 금액 이하 ~ 중위소득 43% 이상	중위 48%이하
교육급여	중생보위 심의·의결 금액 이하 ~ 중위소득 50% 이상	중위 50%이하

현행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중위소득 50% 이하)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를 포함한 가구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¹⁴⁾, 제정

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14)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 65세 이상의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안에 따라 에너지급여가 생계급여와 같이 수급권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한다면 현행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중 일부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에너지급여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에너지바우처가 에너지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에너지 지원에서 제외되는 자는 동시에 생계급여 내 광열비 항목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제도와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급여의 세부내용을 검토 후 에너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법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난방유를 지원받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연료비를 해당 연도에 지원받는 경우
라. 삭제 <2023. 4. 18.>

마. 「석탄산업법」 제29조제7호에 따라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의 급여 실시 및 행정 부담

제 정 안
제6조(보장기관) ① 에너지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②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간의 협조,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조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품의 지급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의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이하 “신청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급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확인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에너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재산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에너지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사의 주기 등 확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조사의 의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에너지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뢰기관, 의뢰의 내용·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장기관등”이라 한다)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수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에너지 사용량을 증명하는 자료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에너지 사용량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등의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보장기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안 제6조는 급여의 실시 주체를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로 규정하고, 보장기관이 급여

에 대한 조사, 결정, 지급 등 보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제도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체계와 유사한 구조로, 지방자치단체가 급여 집행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급여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공무원 인력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급여 의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됨.

참고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2023년 기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인당 담당 복지대상자 수가 평균 327명에 달하여 업무가 과중한 상태이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에너지급여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임.

이에 따라, 에너지급여 제도가 신규로 도입될 경우 기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무 강도와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정원 확보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급여 행정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할 것으로 보임.

마. 수급품의 지급

제 정 안
제7조(수급품의 지급) ① 제2조제4호의 수급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수급품의 지급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및 지역별 기준에너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급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안 제7조는 에너지급여의 지급 방식과 지급기준에 관한 조항으로,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거주 형태, 지역별 기준에너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수급품¹⁵⁾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수급품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형태로 수급품을 지급하는 방식은 급여를 실제 에너지 소비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와 대조적으로,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되, 공공임대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함으로써 급여의 용도 외 사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음¹⁶⁾. 이러한 구조는 급여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집

15) 제정안 제2조제4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뜻함.

16) 「주거급여법」 제7조(임차료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임차료(이하 “임차료”라 한다)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행의 투명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또한,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수급자가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에너지원 유형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바우처 사용 방식을 요금 차감 또는 지정 가맹점에서의 사용으로 제한하는 등 통제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비추어봤을 때, 안 제7조에 따른 현금 형태의 수급품 지급 방식보다는 가구별 특성, 계절별 수요 변화, 에너지원별 가격 차이 등 에너지 소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추가적으로, 안 제2조제4호는 “수급품”을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안 제7조에서는 지급방식을 계좌로 지급한다고 하여 수급품을 사실상 현금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의 규정상 수급품의 개념이 포괄적임에도 수급품 지급 방식을 현금으로 한정하고 있는 안 제7조에 대해서는 급여의 집행 수단과 급여 항목을 보다 구체화하고, 주거급여나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지급방식을 참조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제3항의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의 지급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가구규모, 「주거기본법」 제17조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임차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바. 에너지급여 부담

제 정 안
제19조(에너지급여의 부담) 에너지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부담한다.

안 제19조는 에너지급여의 실시 비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는 보장업무에 필요한 인건비·사무비 외에도 급여 자체의 실시 비용을 국가, 시·도, 시·군·구가 차등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⁷⁾. 이 중 급여 실시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서울은 50%, 그 외 지역은 80 ± 10% 의

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
 - 가.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 나.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不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음¹⁸⁾.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매년 예산 반영 재량에 따른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제정안에 따른 에너지급여 시행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법령에 따라 의무화되는 구조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재정지출 증가 우려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먼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안 제7조에 따른 수급품의 지급, 안 제8조에 따른 에너지급여의 분리 지급, 안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 비용을 제외한 주요 재정지출 증가요인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 2026~2030년간 연평균 재정지출이 총 5,071억원에 달하고, 이 중 에너지급여 실시를 위한 비용은 연평균 4,8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현행 에너지바우처 예산(2026년 기준 5,171.7억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中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215	223	232	240	250	1,160	232
에너지급여 지급 업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4	14	14	11	11	64	13
에너지 급여 실시를 위 한 비용	4,638	4,724	4,824	4,923	5,022	24,131	4,826
합 계	4,867	4,961	5,070	5,174	5,283	25,355	5,071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이며, 유사사례를 준용하였으므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참고 1])는 안 제7조에 따른 수급품의 지급액이 현행 생계급여 내 광열비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된다는 가정하에, 에너지급여의 수급품 및 보장수준을 ‘에너지바우처 + 생계급여 중 광열비 단가’로 하는 경우, 2025년도 예산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에너지 급여 실시를 위한 비용은 연간 1조 3,436억원에서 최대 1조 9,549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음¹⁹⁾.

이와 같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망치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먼저 ①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안 제7조에 따른 수급품의 지급은 구체적인 제도운영 형태에 대한 합리적 가정이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계급여의 광열비 수준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연평균 가구당 60만

19) 에너지급여 단가 971,056원 = (에너지바우처 단가 367,000원 + 광열비 604,056원)

지급 대상: 최소 생계급여 수급권자(중위소득의 32%, 138만 가구) ~ 최대 교육급여 수급권자(중위소득의 50%, 201만 가구)

4,056원 상당의 재정부담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았기 때문임²⁰⁾.

또한, ② 수급가구 수 추계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정안에 따른 에너지급여와 유사한 선정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2% 이하)의 수급자 수를 참고하여 약 124만 가구를 가정한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대치의 경우 전체 기초생활수급가구(교육급여 기준 최대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약 201만 가구를 가정한 바 있음.

추가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수반되는 재정비용은 연평균 232억원, 에너지급여 지급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은 연평균 13억원으로 예상됨.

따라서 제정안에 수반되는 재정지출 증가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안 제5조에 따른 에너지급여 수급 선정 기준과 안 제7조에 따른 수급품의 지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총 재정지출 및 국가·지자체의 부담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치를 산출할 필요가 있으며,

20)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서 안 제7조에 따른 수급품의 지급에 대한 추계를 미 실시한 사유는 아래와 같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수급품의 지급)	×	국가가 수급자에게 수급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어 현 시점에서 확대될 사업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이를 고려하여 현행 에너지바우처 대비 에너지급여로의 전환 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수준 및 국가 재정비용상의 타당성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 그 밖의 주요 내용

제 정 안
제17조(에너지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수급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수급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 3.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결과 4. 제15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자료 5.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의 연계성,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벌칙)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17조는 에너지급여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2조에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안 제23조는 보장기관등의 소속 직원이 급여 실시를 위한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등을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 조항들은 에너지급여 정보시스템 및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급여법」상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 동일함.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과 동일하게²¹⁾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개인정보의 불법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일반법과의 제재 수준의 균형을 고려하여 제재수준의 상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536

21)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참고1

현행·유사 제도 및 신설제도(추정) 비교

○ 바우처 4,797억원 vs 광열비 3,396억원 vs 에너지급여 19,549억원('25)

구 분	에너지바우처	생계급여 중 광열비	에너지급여
지원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2~4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사용 등	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 생계급여의 내용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제14조의3 * 에너지급여
집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지자체
지원대상	다음 두 가지 조건 만족 기초생활수급가구 中 (중위소득 50% 이하)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다자녀가구 * 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다음 두 가지 조건 만족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금액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 * 생계급여와 동일한 구조
지원 가구수 ('25.12월 말 기준)	(2023) 발급기준 122.5만 (2024) 발급기준 125.8만 (2025) 발급기준 139.9만	(2023) 수급가구 120.4만 (2024) 수급가구 135.8만 (2025) 수급가구 138.4만	(2023) 수급가구 178.8만 (2024) 수급가구 188.4만 (2025) 수급가구 201.3만 * 최대 가구수
지원예산	(2023) 2,201억원 (2024) 5,706억원 (2025) 4,797억원	(2023) 2,406억원 (2024) 3,016억원 (2025) 3,396억원 * "생계급여 예산×4%"로 추정	(2023) 10,144억원~15,106억원 (2024) 11,937억원~17,855억원 (2025) 13,436억원~19,549억원 * 최소값은 생계급여, 최대값은 교육급여
지원단가	(2023) 평균 34.7만원 (2024) 평균 38.2만원 (2025) 평균 36.7만원	(2023) 2인가구 49.8만원 (2024) 2인가구 56.6만원 (2025) 2인가구 60.4만원	(2023) 84.5만원 (2024) 94.8만원 (2025) 97.1만원 * 바우처 단가+광열비
지원항목	전기, 도시가스, 등유, 지역난방, 연탄, LPG	현금	현금
신청기간	5~12월	연중	연중
사용기간	7월~차년도 5월	연중	연중

* 생계급여 중 광열비와 에너지급여는 ①2021~2023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복지부), ②2022~2024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복지부 고시), ③2025년도 생계급여 예산 공통요구자료를 근거로 추정

참고2

에너지급여 추정 예산(2025년 기준)

□ 에너지급여 예산 추정 개요

- 에너지급여 예산은 보장수준을 “에너지바우처+생계급여 중 광열비 단가”, 수급자 범위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별로 구분하여 추정

□ 에너지급여 추정 : '25년 기준 13,436억원~19,549억원

① 생계급여 중 광열비(광열비는 생계급여자만 지급) 추정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를 생계비로 지급하며, 해당 금액은 3년 주기로 산정되는 최저 생계비와 비교를 통해 지급수준의 적정성 평가
- 최저 생계비 중 광열비는 최근 산정된 최저 생계비의 약 4%로 산정

* 2021~2023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복지부)

→ 2인*가구 생계급여액은 월 1,258,451원이며, 광열비는 50,338원(연 604,056원)

*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차등이 있으며 평균단가가 2인가구와 근사치

② 에너지바우처 가구 단가 : '25년 연간 367,000원

③ 기초수급가구 : '25년 2,013,319가구(급여별 가구수는 참고4 참조)

⇒ '25년 에너지급여 예산 : 생계급여 **13,436억원**, +의료급여 **14,313억원**,
+주거급여 **19,128억원**, +교육급여 **19,549억원** = (① + ②*) × ③

* 기존에 생계급여만 받고 있는 광열비를 중위소득 수준(+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에 따라 에너지급여가 설정될 경우 해당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가구가 광열비를 다 받는다는 가정

(단위: 억원)

소득수준별 에너지급여 지급예산 (a+b)		광열비(a)*	에너지바우처(b)	
			기존 수급 가구 (69%)	기존 비수급 가구 (31%)
생계급여 (138만가구)	13,436	3,396~8,659	3,296	1,481
의료급여 (147만가구)	14,313	3,396~9,223	3,512	1,578
주거급여 (197만가구)	19,128	3,396~12,326	4,693	2,109
교육급여 (201만가구)	19,549	3,396~12,597	4,797	2,155

* 생계급여 중 광열비는 중위소득 32% 중 4%를 지급하나, 수급자가 소득인정액이 있을 경우 광열비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지급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기존 광열비가 3,396억원이며,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대 금액이 8,659억원, 9,223억원 등

참고3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2025년 기준)

① 저소득층 정의

구분		소득 (기준중위 소득의)	기타 요건	부양의무자 기준	지원내역
기초생활 수급자	생 계	32% 이하	근로능력 無	△(소득 1.3억원 재산 12억원 이상 시)	기준금액과 소득인정액 차액
	의 료	40% 이하		有	본인부담금액 제외 의료비 전액
	주 거	48% 이하		無	임대료 (월 19.1~66.7만) 수선비 (590만원(3년)~ 1,601만원(7년))
	교 육	50% 이하	초중고 자녀 有	無	최저교육비 100% (初48.7, 中67.9, 高76.8만원)
차상위계층		50% 이하	기초수급자 外		

②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③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4년	111만4,223	184만1,305	235만7,329	286만4,957	334만7,868	380만9,185
	'25년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주거급여 (중위 48%)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의료급여 (중위 40%)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25년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참고4

타부처 · 지자체 · 유관기관 · 전문가 의견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개인정보위 (3.18)	- 에너지급여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 불법 이용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준으로 변경 필요(안 제22조, 제23조) * (제정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복지부 (3.19)	- 기존 급여(생계급여)와의 중복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불필요한 업무 과중을 유발함에 따라 동의 곤란 - 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 따라 생계급여에서 이미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연료비를 보장하고 있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규정 관련, '23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수가 327명에 달하는 등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한 현실 고려 시 별도 급여 분리 실익이 낮음
행정안전부 (3.19)	지자체 정원 운영은 지자체 고유 권한으로 인력 운영에 대하여는 지자체장 자율적 판단하에 추진 필요
기획재정부 (4.10)	- 생계급여와 급여 분리 필요성 논의 및 수급자 범위, 수급품 내용, 지급 수준 등에 대한 설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설은 신중할 필요 - 이미 생계급여로 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에너지바우처로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전문기관 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등 추가적 추진체계 마련에 대규모 예산 투입은 부담

○ 지자체 의견

지자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경기도 (3.19)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이미 시행 중으로 대상 확대를 에너지급여 신설이 아닌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 필요

○ 유관·민간 기관 의견

기관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3.19)	- 에너지급여 성격으로 생계급여에 에너지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이미 지원 중으로 실질적 동일 급여를 두 개의 법에서 지원하는 문제 발생 -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의 문제는 에너지급여가 아닌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 필요 - 에너지급여 추진에 필요한 전달체계, 추진 예산 및 업무 과중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정안 반대

한국 에너지공단 (3.19)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에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 급여 신설 시 생계급여와의 중복성 문제 발생 - 에너지바우처 도입 당시(15)에도 생계급여와 중복지급 문제 이슈가 있었으나, 필수재의 보충 지원 목적으로 신설을 인정 • 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된 급여의 목적 외 이용 문제가 있어 에너지 비용에만 사용 가능한 바우처 방식이 적절 • 신청·확인조사 업무에 따른 대규모 인력·예산 소요 문제 발생
한국 에너지재단 (3.19)	• 에너지급여 지급 시 현금지급으로 인한 목적외 사용 우려 - 에너지급여에 현물성 급여 형태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별 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 소홀 문제 대응 필요

○ 전문가 의견(3.18.(화) 전문가 자문 회의)

전문가	의견 주요내용
보건사회 연구원	• 개별 기초 급여를 만들때는 기초 소비 영역이며 가구별 지출편차가 큰 영역으로 생계급여와 구분하여 지급 검토가 가능 - 에너지급여는 기초 소비 영역이나 가구별 지출 편차가 크기 않아 부적합하고, 이 경우 식비, 교통비 등도 개별급여로 가능 • 또한, 생계급여가 아닌 개별 급여로 할 경우 비일상적 지출일 필요 - 장제, 해산급여 및 주거급여 등도 이 원리에 따라 구분 • 에너지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0% 이상”인데 이는 최소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적절한 지급을 위해 기준을 올릴 필요 • 보장기관인 지자체에서 집행 및 예산 책임이 있으나 감당 여력 부족
송실대	• 에너지 사용량 조사는 다양한 연료 공급사의 정확한 자료 제공 및 신뢰도가 전제 되어야함에 따라 개별 지자체에서 감당이 어려움 • 보편적 에너지급여 보다는 네트워크-비네트워크 에너지간 복지 불균형 해소 등이 중요한 문제
에너지경제 연구원	• 에너지바우처 사업 성격 고려 시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확대 필요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 - 생계급여가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급여 전환을 통한 보편적 비용 지원보다는 필요한 가구에 추가 지원하는게 현실에 더 적합 • 차상위계층 중 노인 등 기후민감계층은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급여 중 교육급여자와 동일한데 기초 급여자가 아닌 이유로 지급이 되지 않는 문제 등 사각지대를 발굴해나가는 접근이 필요